

◆ 미국 보험상품 규제의 변화와 국내 비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 등 재무건전성감독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요율규제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FIO는 2013년 “보험규제 체계개선 및 현대화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상품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본고는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종류와 최근 규제현황을 국내와 비교,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보험규제는 크게 재무건전성규제와 상품을 포함한 시장행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자는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사후적 규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상품개발과 판매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함.

■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위험가중자기자본금규제(Risk Based Capital)가 도입되기 전까지 생명보험은 준비금 적정성규제를, 손해보험은 주로 요율규제를 중심으로 보험회사 부실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감독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왔음.

- 손해보험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발생한 배상책임보험위기를 거치면서 보험회사들의 탄력적인 요율결정 및 적용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인가 외의 다양한 형태의 요율규제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대규모계약자에 대한 상품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재무성 산하에 신설된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 이하 FIO라 함)²²⁾은 2013년 12월 “보험규제 체계개선 및 현대화방안 보고서(How to Modernize and Improve the System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²³⁾²⁴⁾에서 보험상품²⁵⁾ 규

22) FIO의 설립근거 법규는 12 U.S.Code § 313-Federal Insurance Office이며, 설립배경 등은 이기형·이상우(2008), 조용운(2010) 참조.

23) FIO는 『Section 502 of Dodd-Frank Act』에 의거,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보험산업 감독규제의 개선 및 현대화 방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주요내용은 〈부록 1〉 참조).

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향후 각주의 상품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FIO는 보험상품(약관 및 요율) 규제에 대해 일부 기업성 보험종목의 규제완화, 개인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주별 약관과 요율규제의 차이로 인한 감독비용 완화, 가격결정 왜곡구조의 해소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본고는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적용 여부의 기본사항인 보험정의에 대한 논의 및 정립과정, 주별 보험상품 규제현황과 FIO의 평가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비교·분석하였음.

2.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종류

미국에서 보험정의는 NAIC를 중심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보험상품 규제의 종류는 사전인가에서 자율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가. 보험정의

■ 최근의 보험상품은 과거의 순수리스크(pure risk) 중심의 보험에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순수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투기적 리스크 요소까지를 포함한 보험으로 진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업과 보험상품 개발의 핵심이 되는 보험정의도 변화해 갈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보험정의는 은행지주회사의 영업행위 가능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화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현재는 NAIC를 중심으로 한 보험산업 내에서 보험정의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24) <http://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Document/How%20to%20Modernize%20and%20Improve%20the%20System%20of%20Insurance%20Regulation%20in%20the%20United%20States.pdf>.

25) 미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별보험종목 단위를 상품이라고 지칭함. 국내의 경우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기초서류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를 함.

■ 1990년대 이전 미국의 보험정의를 주별로 보험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은 보험업이 주보험청 규제를 받는 것 등의 일정한 조건²⁶⁾을 만족하는 경우에 연방반독점법의 적용제외로 인정한 1945년 『맥커런퍼거슨법』에 기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보험정의를 주 보험법과 법률적 해석²⁷⁾ 등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Financial Modernization Act 1999 또는 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A라 함))』이 제정되면서 보험정의를 확립논의가 확대되었음.

■ GLBA 제6712조²⁸⁾ ((c)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insurance” means—)
는 전국은행이 보험영업 활동을 못하도록 보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 ① 1999년 1월 현재 주 보험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
- ② 1999년 1월 이후 주 보험청의 인가를 받고 최초로 제공되는 배상책임, 생명손해, 건강손해, 재산의 손괴를 부보, 보증,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재물손해보험, 권리손해담보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²⁹⁾
 - 세법 제7702조에서 정한 생명보험상품³⁰⁾ 및 세법 제 832(b)(5)에 해당하는 보험상품
- ③ 세법 72조에 의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계약(annuity contract)³¹⁾

26) 보험업의 연방 반독점법 적용제외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임(15 U.S.C Section 1011-1015, Justin L. Brady et.al.(1995),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pp. 46~47).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요건으로 계약자의 리스크 분산 또는 전가에 효과가 있어야 하고,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관계를 증권으로 통합한 활동이어야 하며, 보험업 내로 국한된 활동이어야 함.

-주의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함.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거래거절 또는 강요, 협박의 행위 또는 이를 위한 협정을 구성하지 않아야 함.

27) Griffin System v. Washburn의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자 간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 존재, 계약자의 피보험이익 존재, 계약자의 보험료 지불을 약정, 담보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리스크 인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함(GAO(2006), p. 23).

28) 15 U.S.C §6712, Insurance underwriting in national banks(<http://www.gpo.gov/fdsys/granule/USCODE-2011-title15/USCODE-2011-title15-chap93-subchapl-sec6712>).

29) 개인자동차보험, 상업용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모기지보험, 상공업종합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화재계열보험, 농장종합보험, 항공기보험, 신원 및 이행보증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해양보험, 내륙운송보험, 기관기계보험.

30) 현금가치축적테스트(Cash Value Accumulation Test),안내보험료 요건(Guideline Premium Requirements), Cash Value Corridor 범주 이내에 해당되어야 함.

31) 연금계약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세금배제율(exclusion ratio)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전부 과세하게 됨(세금배제율=투자금액(연금보험료)/기대수입(payout)).

■ GLBA는 이와 같이 보험의 종류에 대한 범위만 정하고 보험정의는 주 보험청이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주별로 보험정의와 보험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워싱턴 D.C, 일리노이, 미시건, 텍사스 주,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테네시 등은 보험정의가 없고 보험종류(class of insurance)만 열거하여 각 보험종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보험약관과 요율을 규제하고 있음.³²⁾

○ 보험정의와 보험종류를 열거하여 약관과 요율을 규제하고 있는 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보험은 “일방이 우연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손괴, 배상책임을 다른 상대방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Cal. Insurance Code §22).³³⁾

- 콜로라도 주는 보험은 “일방이 확정할 수 있는 우연한 리스크(determinable risk contingencies)에 의해 특정 또는 확정적인 금액 또는 급부를 상대방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consideration)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Colo. Rev. Stat. §10-1-102(7)).

- 뉴욕 주의 경우에는 보험정의는 없으나 보험계약을 “일방(보험자)이 우발적 사고발생(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실질적인 이해관계(a material interest)를 그 사고 발생 때에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금전적 가치의 급부(benefit of pecuniary value)를 지급의무를 진다는 합의, 기타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음.³⁴⁾

■ GLBA 시행 이후 NAIC는 각주 보험청이 보험정의를 규정하거나 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정의 구성 4가지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³⁵⁾을 제시하였음.

○ 보험정의의 4가지 요소는 “①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면계약에 의해 협정할 것, ② 일방(계

32) Todd et al.(2000), p. 233.

33) 22.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one undertakes to indemnify another against loss, damage, or liability arising from a contingent or unknown event.

34)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2006), 뉴욕주보험법(상), p. 55(N.Y. ISC. LAW § 1101: NY Code-Section 1101(a)).

35) NAIC(2000), Definition of Insurance, Working Group White Paper(<http://www.naic.org/store/free/DOI-OP.pdf>).

약자)으로부터 확인된 리스크로 기인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자 또는 모두(보험회사)에게 전가가 있어야 할 것, ③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 지불을 약정(consideration)할 것, ④ 보험회사는 약정한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인수하며,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급부의 어떤 다른 형태를 보상(indemnify), 방어(defend) 또는 제공(provide)할 책임이 수반될 것”임.

- 이러한 구성 요소를 수용하여 보험을 정의하고 있는 주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주가 대표적임.

■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은 보험을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상법에서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을 정의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 보험업(business of insurance)을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실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로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있음.
- 보험업은 보험업법에서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국내와 미국을 비교하는 경우, 국내가 전가리스크를 전통적인 순수리스크(재산, 생명, 신체)로 제한하고 있어 NAIC의 보험정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보험상품 규제종류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등 경쟁을 촉진하는 정도에 따라 경쟁적 상품규제³⁶⁾와 비경쟁적 상품규제로 구분되며 보험종목별 보험약관과 요율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비경쟁적 상품규제는 주제정보험상품 적용, 사전인가(Prior Approval)가 대표적임.³⁷⁾

36) 감독관은 시장구조, 시장성과, 시장행위, 소비자의 가격정보 획득 및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경쟁 여부를 판단하며, 경쟁적인 시장여부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1년 단위로 결정함. NAIC(2010), 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Law Guideline 2010, Section 4 competitive market.

37)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p. 3 및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pp. 11~12 참조 정리.

- 보험청(또는 요율산출기구) 작성 보험상품 적용제도(State or Bureau-made Form, Rate)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약관이나 요율을 보험청이나 요율산출기구에서 작성하여 제시하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경쟁성이 가장 없는 제도임.
- 사전인가제도(Prior Approval)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요율을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하기 일정기간 전에 주 보험청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형태임.

■ 경쟁적인 보험상품 규제는 범위요율제도(Flex Rating), 신고제도(File & Use), 보고제도(Use & File), 자율제도(No File) 등이 있음.

- 범위요율제도는 사전인가제도와 경쟁적제도(File & Use 또는 Use & File)를 혼합한 제도로 보험회사가 기준요율에 대해 일정 허용폭(flexibility bands)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 또는 보고함.
 - 보험회사가 일정 허용폭을 벗어나서 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
- 신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요율을 사용하기 전 혹은 특정 기한³⁸⁾ 내에 주 보험청에 신고하고 보험청의 거부가 없는 한 인가되는 형태이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
- 보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요율을 계약자에게 적용한 후 일정기한 내에 보험청에 신고하여 특정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되는 규제임.
- 제출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약관이나 요율을 보험청에 제출만 하면 되는 제도로 제출에 대한 특정한 기한이 없고 보험청에서 거부의사가 없는 한 인가되는 제도임.
- 자율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약관이나 요율을 보험청에 제출하거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로 가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나 파괴적 경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규제형태임.

■ 1990년대 이후 상품규제는 보험회사의 규제비용 감소와 상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접수방식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0년대 초 주보험청은 전자접수제도(SERFF: System for Electronic Rate and Form Filings)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워싱턴 DC와 49개 주의 3,900개 보험회사가

38) 모델법은 30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주 보험법에서는 최저 10일 최대 90일까지로 다양하며 상당수의 주가 30일을 채택하고 있음.

648,150건을 이용하였음.

-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다수 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를 위한 주간보험상품규 제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³⁹⁾

3. 보험상품 규제 현황 및 FIO 의견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보험산업별로 다르게 운영됨. 생명보험 가격은 준비금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이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법』시행으로 계약자들의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라 요율규제 방법과 요율변수 사용을 달리하고 있음. 손해보험은 주별로 종목마다 다양한 규제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쟁을 촉진하는 신고제 또는 보고제를 채택한 주가 전체보험료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FIO는 보험회사의 규제비용 축소를 위해 주별 규제차이 개선과 대규모 계약자에 대한 상품규제 완화를 제안하였음.

가. 생명보험 상품규제

-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생명보험 약관과 보험료에 대해 손해보험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준비금 평가를 통해 보험료 적정성을 판단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음.⁴⁰⁾
 - 보험약관은 보험료와 다르게 주 보험청의 사전인가 등의 규제를 받는 주가 다수 있음.⁴¹⁾
 - 다수 주에서 영업을 하는 생명보험사는 소재지 주 보험청의 보험약관을 인가받아야 하고 영업하는 주 보험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주간보험상품인가제도”를 도입하였음.
-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주간보험상품인가제도는 NAIC가 2003년에 제정한 『주간보험상품규제협정(The 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pact, 2003. 7)⁴²⁾ 모델규제』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39) Harrington(2013), pp. 204~217 요약 정리.

40) NAIC(2014), State Insurance Regulation: History, Purpose and Structure, p. 3.

41) 금융감독원(2006), 보험심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p. 8~12.

42) <http://www.naic.org/store/free/MDL-692.pdf>.

- 동 모델규제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 상품(약관)⁴³⁾과 광고에 대해 심의기관이 심사하여 승인하면 개별 주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보험회사가 다른 주의 인가나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됨.
- 동 제도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개인 및 단체 연금보험, 장기 간병보험, 장애소득보험(Disability Income Insurance)임.
- 2015년 1월 말 현재 동 규제를 채택한 주(compacting state)는 43개 주이며 미국 전체 생명보험료의 73%에 해당됨.
 - 동 규제를 채택하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델라웨어, 코네티컷,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DC임.⁴⁴⁾
- FIO는 보험규제 현대화방안의 일환으로 주법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주에 대해 동 제도의 채택을 권고하였음.⁴⁵⁾

■ 동 인가제도의 심의기관은 비영리형태로 2006년에 설립된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 (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mission: IIPRC)”임.

- 회원사가 상품과 광고에 대해 인가신청을 하면 상품별 통일표준(Uniform Standard)에 의거 소정기한 내에 심사하여 인가해주고 있음.
- 2013년 현재 통일표준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생명보험, 연금, 장기간병보험, 장애 소득보험 등에 대해 93개가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생명보험 상품 인가현황을 보면, 198개 보험회사가 999개 상품을 접수하여 876개 보험상품이 인가되었으며, 평균 심사기간은 27일이었음.
 - 보험상품에 첨부된 특약(form)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현재 3,205개에 이름.

43) 상품은 보험약관(청약서, 특약, 배서 포함)만 해당하며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오하이오 주 보험법 sec. 3915.16 article II.11. product).

44) <http://www.insurancecompact.org/index.htm>.

45) FIO(2013), p. 50.

〈표 10〉 IIPRC의 생명보험 상품 인가 현황

(단위: 개사, 건, 일)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등록회사	-	38	74	113	132	167	182	198
상품접수	36	106	244	368	464	744	806	999
특약접수	113	395	1,314	1,456	1,588	2,595	2,657	3,205
수정접수	-	-	-	40	78	157	251	220
인가상품	29	126	279	320	436	625	769	876
인가율(%)	81	119	114	87	94	84	95	88
심사일수	35	25	28	42	38	23	28	27

자료 : IIPRC(2014), Annual Report, p. 12(<http://www.insurancecompact.org/index.htm>).

■ FIO는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다수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가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IIPRC)에 참여하여 최초 상품인가에 대한 중복회피 등 절차를 개선하고, IIPRC의 취급상품 확대를 제안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애소득보험, 장기간병보험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험시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뉴욕 주가 비회원으로 되어 있어 그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들 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나. 건강보험의 상품규제

■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상품규제는 생명보험과 달리 약관과 요율에 대해 사전인가에서부터 신고제도, 보고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 개혁이 추진되면서 보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요율변수 등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음.

■ NAIC는 2007년에 『건강보험 약관 및 요율 신고모델법(Health Policy Rate and Form Filing Model Act)』⁴⁶⁾과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Filing of Rates for Individual Health Insurance Forms)⁴⁷⁾을 공표하여 향후 건강보험 상품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모델법은 보험회사가 건강 및 상해보험의 약관 및 요율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주 보

46) <http://www.naic.org/store/free/MDL-165.pdf>.

47) <http://www.naic.org/store/free/MDL-134.pdf>.

협청에 신고 또는 인가신청을 하고, 주 보험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 또는 수정보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러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재접수를 하지 않으면 인가가 거부되는 것으로 규정함.

-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 및 상해보험의 약관과 요율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할 때 첨부되어야 할 서류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율산출에 필요한 경험실적기간은 3년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주 보험청은 NAIC의 모델법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상품규제를 하고 있으며 많은 주가 개인보험과 소규모단체 건강보험(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⁴⁸⁾

- 2014년 현재 사전인가를 채택한 주는 개인보험에 대해 34개 주이며, 소규모 및 대규모 단체보험에 대해 각각 27개 주, 24개 주임.
- 신고제도를 채택한 주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이며, 요율산출자료만 제출하는 주는 조지아 등이 있음.
- 개인보험에 대해 자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앨라배마 등 3개 주이며, 소규모 및 대규모 단체보험에 대해서 각각 12개 주임.

48) <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표 11〉 건강보험 약관 및 요율 인가제도 운영 현황(2010)

형태	개인보험	단체보험	
		소규모그룹	대규모그룹(50인 이상)
사전인가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34개 주)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몬태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27개 주)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 몬태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24개 주)
File & Use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건,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11개 주)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텍사스, 유타(9개 주)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리건, 텍사스, 유타(12개 주)
Use & File	위스콘신(1개 주)	위스콘신(1개 주)	위스콘신(1개 주)
Filing Only	아칸소, 조지아(2개 주)	조지아, 버지니아(2개 주)	조지아, 버지니아(2개 주)
No File	앨라배마, 일리노이, 미주리(3개 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주리, 네바다,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12개 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주리, 네바다,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12개 주)

자료 : 1) <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2) Gilbert Ojed et al, (2012), p. 14.

■ 『오바마케어법(The 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2010)』에서도 건강보험의 요율변수(rating variable)와 관련하여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개인과 소규모그룹(small group)에 대한 보험을 인수할 때 보험료의 차등화 변수로 나이, 흡연여부, 가족규모, 거주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그룹보험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음.⁴⁹⁾
- 또한 요율변수별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이의 경우 최저그룹에 대해 최대 3배 이내, 흡연여부는 최대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음.

49) <http://obamacarefacts.com/obamacare-health-insurance-rules/>.

-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였던 요율변수인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s), 건강상태(health status), 보험금지급실적(claims history), 보험가입기간(duration of coverage), 성별(gender), 직업과 종업원 규모 및 업종별 변수는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추가하여 개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정손해율의 상한(개인 및 소규모그룹: 80%, 대규모그룹 85%)을 정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개인보험과 소규모그룹보험별 요율변수 사용은 주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음.⁵⁰⁾

- 소규모그룹보험의 경우 건강상태와 보험금지급실적을 제외한 변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수정지역요율제도(Adjusted Community Rating)를 채택한 주는 9개 주(앨라배마,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오리건, 워싱턴)임.
 - 지리적인 요인만을 이용하여 보험료 차등화를 하는 지역요율제도(Community Rating)를 채택한 주는 뉴욕과 버몬트 주임.
 - 소규모 그룹관련 요율규제를 채택하지 않은 주는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임.
-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뉴욕 주만 지역요율제도(Community Rating)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메인, 워싱턴, 오리건, 버몬트, 뉴저지 등 6개 주가 수정지역요율제도(Adjusted Community Rating)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외에 요율변수에 대한 범위요율제도(Rating Band)는 아이다호, 켄터키,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미네소타 등 11개 주가 채택하고 있음.
 - 워싱턴 DC와 기타 32개 주는 요율변수에 대한 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FIO 보험약관 규제(Form Regulation)는 인가형태와 심사기간 등이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주 감독자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상품규제의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차익 기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50) http://www.naic.org/documents/topics_health_insurance_rate_regulation_brief.pdf.

다. 손해보험 상품규제

- 손해보험의 상품규제는 생명보험에 비해 구체적인 형태로 1900년대 초부터 운영되었음.
- 화재보험의 경우 1909년 캔자스 주가 처음으로 사전인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차별성, 비과도성, 적정성 원칙에 기초하여 약관과 요율을 심사하였음.⁵¹⁾
 - 그 이후 뉴욕 주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고 요율산출기구(Rating Bureau)⁵²⁾를 인정하는 법규를 채택하였으며, 다른 주로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상품규제 형태가 도입되었음.
 - 요율산출기구인 ISO의 경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영업보험료를 산출하여 제시했지만 그 이후 권고요율로 전환하고 1989년부터 참조순보험료(prospective loss cost)⁵³⁾를 산출하여 주 보험청의 인가를 받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 회원사는 요율산출기구의 참조순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아울러 요율산출기구는 산출하는 보험종목의 표준약관(standard policy)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가 주 보험법에 요율규제법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만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한정해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 현재는 대부분 보험종목에 보고제를 운영함.⁵⁴⁾
- NAIC는 손해보험의 약관과 요율규제가 주별로 상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주 보험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51) Angelo Borselli(2010), "Insurance Rates Regulation in Comparison with Open Competi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Vol. 18.1, p. 115.

52) 대표적인 요율산출기구는 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Surety Association of America(surety bonds and crime insurance), Insurance Services Office, Inc.(most commercial and personal lines other th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merican Association of Insurance Services, Inc.(many commercial and personal lines other than workers compensation)가 있음.

53) Insurance Service Organization의 경우 상공업보험(Commercial Lines) 12종(Automobile, Boiler and machinery, Business owners, Crime, Employment-related practices liability, Farm, Glass, Inland marine, Liability(various types),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Package policies, Property Insurance), 가계성보험 6종(Automobile, Dwelling fire and allied lines, Homeowners, Inland marine, Liability(including personal umbrella))임.

54)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Analysi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 Regulatory Laws, p. 4.

- 2010년에 『손해보험 모델 요율약관법 가이드라인(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LAW GUIDELINE 2010)⁵⁵⁾』을 제시하였음.
- 또한 손해보험 약관 및 요율규제가 다양한 점을 감안해 『사전인가 모델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 Prior Approval Version)⁵⁶⁾』 『신고제도모델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 File and Use Version)⁵⁷⁾』도 추가적으로 공표하였음.

■ 1990년대에 들어 대규모 계약자가 가입하는 상공업보험(Large Commercial Lines)에 대한 상품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NAIC는 『손해보험 모델요율약관 규제 가이드라인(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Regulation Guideline)』을 제시하였고 다수 주가 이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주보험청의 약관과 요율에 대해 사전인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계약자(Exempt Commercial Policy Holders, 이하 ECPs라 함)는 아래 조건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음.
 - ① 순자산 5천만 달러 초과, ② 순수입 또는 순매출액 1억 달러 이상, ③ 종업원 500명 이상(지주회사 1,000명이상)인 개인기업, ④ 고용 또는 확보된 리스크관리자가 보험계약체결을 행하는 기업, ⑤ 총보험료 50만 달러 초과, ⑥ 연간예산 또는 자산 4,500만 달러 초과 비영리공익법인, ⑦ 인구 5만 명 초과 자치단체
- 2014년 현재 ECPs를 채택한 주는 알래스카 등 31개 주임.⁵⁸⁾
 - 주 보험청은 NAIC 모델법의 ECPs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각주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으며, ECPs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인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대부분의 주가 약관과 요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⁵⁹⁾
- 뉴욕 주의 경우 개인보험을 제외한 내륙운송보험과 기업성 보험계약의 약관과 요율에 대

55) <http://www.naic.org/store/free/GDL-1776.pdf>.

56) <http://www.naic.org/store/free/GDL-1780.pdf>.

57) <http://www.naic.org/store/free/GDL-1775.pdf>.

58)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워싱턴 DC,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Regulation Modernization.

59) NAIC(2014), Commercial Lines(EX) Working Group.

한 인가 또는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뉴욕 주 보험법 제6301조-6304조).

-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유지하고 있음을 승인받아야 하며, 대상계약자도 스스로 리스크관리자를 고용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개인 손해보험의 요율규제는 주별로 다른 규제형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인가보다는 신고제 또는 보고제, 범위요율을 채택하는 주가 더 많음.

○ 2013년 현재 개인자동차보험에 사전인가제도를 채택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 등⁶⁰⁾ 16개 주이고 워싱턴 DC를 포함한 34개 주는 신고제도 또는 보고제도, 범위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특히 와이오밍 주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율요율(No File)을 채택하고 있음.

○ 범위요율제도(Flex Rating)는 주로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에 적용하고 있음.

- 알라스카의 경우 $\pm 10\%$, 캔터키는 $\pm 25\%$ (1년 이내), 뉴저지는 자동차보험 $\pm 7\%$, 주택종합보험 $\pm 5\%$ 를 운영함.

- 그리고 노스다코타 $\pm 5\%$ (Use & File), 펜실베이니아 $\pm 10\%$, 사우스캐롤라이나 $\pm 7\%$, 테네시 $\pm 15\%$ 를 적용하며, 뉴욕 주는 개인용자동차보험에 한정해 $\pm 5\%$ 를 운영하고 있음.

- 개인보험 이외의 종목은 의료사고배상책임에 한정해 워싱턴 DC는 $\pm 10\%$, 뉴저지는 $\pm 15\%$ 를 채택하고 있음.

■ FIO는 주별로 다른 규제방식을 모니터링하여 보험소비자보호와 보험사업자의 리스크와 비용축소가 가능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조사,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FIO는 주별로 보험상품 및 요율규제의 방법과 세부절차(심사기간 등 인가기간, 제출자료) 등이 크게 달라 다수 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에게 규제비용 상승⁶¹⁾을 초래하며 가격결

60)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61) McKinsey & Company(2009)의 분석에 따르면 1개 이상의 다수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130억 달러비용을 부담하고 손해보험회사는 72억 달러, 생명보험회사는 57억 달러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의 보험감독비용은 영국의 7배나 된다고 평가하였음.

정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FIO는 보험회사가 개인보험에서 다양한 요율변수를 사용하여 과도한 리스크 세분화(risk classification)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소비자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보험가용성 문제(availability problem)가 존재하게 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FIO는 주 보험청이 개인보험종목의 가격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표준을 작성하고, 보험스코어⁶²⁾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 보험판매채널과 보험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아울러 FIO는 보험가격산정과 담보범위 결정에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를 향후 작성할 계획임.

- FIO는 ECPs에 대한 상품규제 완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주가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음.

- 1998년부터 추진된 ECPs에 대한 규제완화는 보험시장 상황에 부합한 상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국 손보사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나 다수 주가 동 규제완화를 채택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도입 확대를 촉구하였음.

4. 보험상품 규제의 영향

가. 규제수준별 시장분포 및 잔여시장 영향

■ 보험상품의 요율규제는 가격결정 등 시장행위, 시장성과, 시장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보험요율을 사전인가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변동에 따라 적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리스크 계약자가 높은 리스크 계약자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시장왜곡을 초래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리스크가 큰 계약자에 대해 인수를 기피하여 잔여시장(residual market)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62) 보험스코어는 계약자의 운전경력, 나이, 성별, 우편번호, 결혼유무, 신용도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작성함.

■ 주별 요율규제와 시장행위의 결과인 잔여시장 규모, 감독비용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별 요율규제수준지수를 만들어 평가하였는데, 주별 요율규제수준은 사전인가 등 비경쟁요율수준에 해당하는 주보다는 신고제 또는 보고제 등 경쟁요율수준에 해당하는 규제를 하는 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요율규제수준은 요율규제수준이 0.20보다 적으면 자율요율 시장, 0.20 초과 0.60 이하이면 경쟁요율 시장, 0.60을 초과하면 비경쟁요율 시장으로 구분하였음.

- 요율규제수준은 주별 종목별 보험료 비중에 요율규제형태별 비중을 곱해 산출하였음(규제강도=Σ종목별 보험료비중×규제형태비중(주제정요율 1.0, 사전인가 0.9, 범위요율 0.6, 신고제 0.4, 보고제 0.2, 자율요율 0)).

○ 2013년 현재 자율요율 시장과 비경쟁요율 시장에 해당하는 주(38개 주, 미국전체보험료의 63.9% 점유)가 경쟁요율 시장의 주보다 높게 나타났음.

- 비경쟁요율 시장에는 보험료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주를 비롯한 12개 주로 전체보험료의 36.1%를 차지함.

〈표 12〉 손해보험 요율규제 수준별 주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요율규제 수준	자율요율 시장	경쟁요율 시장	비경쟁요율 시장
	규제수준 < 0.2	0.2 ≤ 규제수준 ≤ 0.6	0.6 < 규제수준
해당 주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3개 주)	메인, 미주리, 유타, 버몬트, 루이지애나, 델라웨어, 인디애나, 아이다호, 텍사스,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건, 아칸소, 플로리다, 콜로라도, 캔자스, 아이오와, 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DC, 뉴햄프셔, 와이오밍,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오리건, 오하이오, 켄터키, 조지아, 알래스카, 매사추세츠(36개 주)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하와이 (12개 주)
보험료(2013)	38,302	307,166	195,108
전체비중	7.1%	56.8%	36.1%
주별 평균보험료	12,167	8,532	16,259

주: 각주의 보험상품별 규제방법과 요율규제수준은 〈부록 1〉 참조.

자료: NAIC 홈페이지,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각 주별 통계에서 추출.

■ 주별 손해보험 요율규제수준과 손보 감독비용, 감독인수, 민원지수, 보험수요인 보험침투도와 밀도와의 관계를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음.

○ 주별 요율규제수준은 감독비용, 민원지수, 감독인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보험수요인 밀도와 침투도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음.

〈표 13〉 주별 요율규제 수준 관련 기초자료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합계	최소값	최대값
요율규제수준		51	0.46	0.18	23.44	0.17	0.90
손보감독비		51	1.62	0.85	82.66	0.25	4.75
민원지수		51	0.41	0.20	21.03	0.07	1.21
감독인 비중		51	2.52	1.99	128.37	0.81	14.16
보험침투도		51	0.03	0.01	1.75	0.02	0.05
보험밀도(로그값)		51	7.47	0.22	381.17	7.14	8.30
공동인수	개인자동차	51	0.57	3.10	29.29	0.00	22.04
	주택종합	51	1.52	4.95	77.59	0.00	31.51
무보험차비중		51	12.21	5.17	622.60	3.90	25.90

주 : 1) 모든 자료는 2013년 기준임. 손보감독비=(전체감독예산액×손보보험료비중)/손해보험료×1000

2) 민원지수는 손·생보 민원건수/보험료 100만 달러, 감독인 비중은 감독인 수/손보보험료 1만 달러, 1인당 회사 수는 영업 중인 주 내 보험회사 수/감독인 수, 침투도는 손보보험료/GDP, 밀도 ln(손보보험료/인구).

3) 잔여시장의 경우 개인용자동차보험비중은 임의보험부보대수에서 공동인수부보대수 비율, 주택종합보험비중은 주택종합보험보험료에서 잔여시장보험료 비중임. 무보험차비중은 대인배상보험금청구건수에서 무보험자의 보상청구건수 비율임.

자료 : 1) 주별 보험감독비, 종목별 보험료는 NAIC 홈페이지,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에서 추출.

2) 공동인수의 잔여시장은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Insurance FackBook 활용.

〈표 14〉 주별 요율규제 수준과 감독비용, 보험밀도 등의 상관관계

구분	요율규제 수준	손보 감독비용	민원 지수	감독인 비중	보험수요		잔여시장		무보험 차비중
					침투도	밀도	개인자동차	주택종합	
규제강도	1.000	-	-	-	-	-	-	-	-
손보감독비용	0.167***	1.000	-	-	-	-	-	-	-
민원지수	0.184***	0.012	1.000	-	-	-	-	-	-
감독인 비중	0.156	0.488*	0.116	1.000	-	-	-	-	-
보험침투도	-0.082	-0.037	-0.167	0.020	1.000	-	-	-	-
보험밀도	-0.058	-0.011	-0.183***	-0.027	0.427*	1.000	-	-	-
잔여시장	개인자동차	0.190***	-0.067	0.241**	0.029	-0.144	-0.159	1.000	-
	주택종합	-0.073	-0.113	-0.074	-0.082	0.285*	0.146	0.068	1.000
	무보험자	0.001	-0.150	-0.022	-0.138	0.189***	-0.155	-0.112	0.244**

주 : *는 5% 유의수준, **는 10% 이내 유의수준, ***는 25% 이내 유의수준임.

■ 요율규제수준이 잔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요율규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자동차보험의 잔여시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⁶³⁾ 동 분석이 1년간 자료라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음.

〈표 15〉 요율규제 수준별 감독비용, 잔여시장 차이

(단위: 백만 달러, 인, 건, %)

요율규제 수준	보험료	손보 감독비	보험 밀도	침투도	평균 감독자수	민원 건수	회사/ 감독자	개인 자동차 잔여시장
자율요율시장	38,302	1.81	1,652	3.42	149	4,931	1.19	0.00
경쟁요율시장	307,166	1.56	1,867	3.49	184	3,582	0.77	0.14
비경쟁요율시장	195,108	1.77	1,677	3.27	362	10,267	0.45	2.01

주: 항목별 설명은 〈표 4〉 참조.

- Regan et al.(2009)⁶⁴⁾는 50개 주에 대해 1990~1998년간 자동차보험의 요율규제(사전 인가와 경쟁요율)와 잔여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전인가를 채택하고 있는 주가 잔여시장 규모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율규제가 무보험자를 감소시킨다는 판단을 유보하였음.
- Tennyson(2007)⁶⁵⁾은 요율규제가 보험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수익이 감소하여 특정시장의 보험가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계약자에게 리스크에 부합한 보험료부과가 되지 못하여 더 많은 잔여시장(residual market)이 만들어지며, 다수 소비자에게 평균적인 보험비용을 상승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요율규제는 사회와 보험소비자에게 높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음.
-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요율규제수준을 높게 하면 가격결정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잔여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63) 자율요율수준의 주 0.0%, 경쟁요율수준의 주 0.14%, 비경쟁요율수준의 주 2.01%.

64) Regan et al.(2009), p. 37.

65) Sharon L. Tennyson(2007), Efficiency Consequences of Rate Regulation in Insurance Markets, Networks Financial Institute Policy Brief No. 2007-PB-03.

나. 요율규제의 시장성과 및 구조에 대한 영향

■ 주별 요율규제강도가 보험회사의 성과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변동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NAIC는 요율규제를 강하게 하는 주와 그리하지 않은 주의 보험회사 수익성(insurer profitability)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 보험회사의 수익성과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 경영효율성, 가격경쟁전략 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표 7〉 참조).⁶⁶⁾
- 또한 요율규제는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보험회사의 수익성 크기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보험영업이익 변동성에는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음.
- 사전인가제도 채택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 변동성은 그리하지 않은 주(market oriented rating law)의 보험회사 변동성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인 요율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손해실적(loss experience)에 따라 신속하게 요율을 변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표 16〉 개인용자동차보험 요율규제 형태별 수익률과 시장집중도

규제형태	보험료		보험료인상률(%) (1989~2010)	평균이익률 (2010년, %)	시장집중도 (HHI)
	10억 달러	비중(%)			
사전인가	63.40	42.4	48.0	9.4	996
File & Use	63.80	42.6	60.4	7.7	1,031
Use & File	12.60	8.4	61.7	9.7	865
Flex	4.70	3.1	66.8	4.5	1,311
No File	5.10	3.4	70.1	9.7	1,207
계	149.60	100.0	43.3	8.6	698

주: 미국 법무성은 HHI <1000: 경쟁시장, 1000 ≤ HHI ≤ 1800: 다소 집중된 시장, 1800 (HHI: 높게 집중된 시장으로 구분함.
자료: J. Robert Hunter et al.(2013), pp. 8~1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 Hunter et al.(2013)⁶⁷⁾은 요율규제 형태와 시장구조를 개인용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요율규제가 약하게 되면 집중도(HHI)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7〉 참조).

66)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pp. 8~9.

67) J. Robert Hunter et al.(2013), p. 10.

- 사전인가제도를 채택한 주의 집중도가 996으로 규제가 적은 주의 집중도 1,207보다 적게 나와 오히려 요율규제가 강함에도 경쟁적인 시장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⁶⁸⁾
- 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적정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가격경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됨.

■ D' Arcy(2001)은 1971년 이후 개인용자동차보험 요율규제를 하지 않은 일리노이 주와 그러하지 않은 주들과 35년간의 손해율, 잔여시장규모, 파산회사 등을 비교하여 본 결과, 소비자보호 불가능 등의 문제가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5. 요약 및 국내 비교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규제를 비교한 결과, 보험정의는 국내가 순수리스크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규제는 보험종목별 적용 및 규제법규의 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 미국 상품규제의 요약

-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주로 손해보험의 개인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요율과 경쟁요율수준에 해당하는 주가 38개 주로 전체보험료의 63.9%를 점유하고 있음.
- 보험상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전인가 등의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잔여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감독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민원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6〉).
- 또한 상품규제의 차이가 보험회사의 수익률 수준에는 영향이 적지만 경쟁시장인 주의 수익률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7〉).
- FIO는 주별 상품규제 차이 등으로 인한 감독비용 상승억제와 보험가용성문제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보험회사와

68)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1994년 가격자유화 이전에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함.

주 보험감독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은 FIO를 중심으로 최근 EU와 재무건전성규제와 보험상품 규제를 포함한 시장 행위규제 등 전반적인 보험감독 규제에 대해 보험협상⁶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험 계약에 대한 담보제공 등 상품운영 규제부분의 변화가 예상됨.

○ 보험상품 규제의 경우 EU는 1994년 이전까지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해왔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가격을 제외한 약관)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⁷⁰⁾

나. 국내 비교

■ 국내 보험상품 규제의 경우 미국의 효율규제와 유사하게 신고제 또는 보고제 등 경쟁적인 효율규제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전자적인 접수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규제를 비교하여 보면 보험정의, 보험상품 구성요소, 규제 적용대상 상품, 규제 적용단위, 법규체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69) EIOPA(2012), pp. 7~10.

70) Eling Martin et.al.(2009), pp. 19~24.

〈표 17〉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규제비교

구분		미국	한국
보험 정의		순수리스크 외로 확대	순수리스크에 한정
상품 규제 적용 체계	보험상품 구성	보험약관, 보험료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표준약관	요율산출기관	금융감독원
	규제종류	사전인가, 신고제, 보고제, 범위요율, 자율요율	신고제, 보고제
	규제적용 단위	보험종목별, 계약자규모별, 리스크세분화(개인용자동차, 건강보험)	- 보험종목별, 판매채널별, 특별계정 해당여부, 요율산출 방 법별 - 요율조정범위별(±25%), 표준기초서류 사용여부 - 리스크세분화 도입여부, 요율조정 회수별 - 보험기간별, 사업비부과방식(후취) 등
	적용상품	손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일부 주 약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전 종목
	처리기간	주별 90일, 60일, 45일, 30일, 15일, 10일 다양함	신고: 30일 전 제출, 20일 이내 변경권고 보고: 분기종료 후 10일 내 목록제출
	제출방법	전자방법 이용(SERFF)	금융정보교환망(2014년 도입)
규제법규		주보험법, Regulation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 업무시행세칙

■ 첫째, 국내의 보험정의는 리스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전가기법도 금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순수리스크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존재해 종합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에 제약받을 가능성 존재하나, 미국은 포괄적 정의로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별주 보험법에서 보험정의를 내리고 있는 관계로 주에 따라 Warranty, Guarantee 등 유사상품에 대해 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⁷¹⁾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NAIC는 보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각주에 채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2000년에 제시하였음.

-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법에서 보험계약⁷²⁾을 정의하고 있으나 보험은 정의하고 있지 않아 날씨파생상품, 자동차서비스상품, 제품보증 등에 대해 보험법 적용 논의와 더불어 보험개념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⁷³⁾

71) DCSC(Debt Cancellation or Suspension Contract)의 경우 일리노이 주와 미시간 주는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뉴욕 주는 보험으로 보고 있음(GAO(2006), p. 27).

72) 일본 보험법 제2조 제1항은 “보험계약, 공제계약, 기타 사용하는 이름에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의 급부(생명보험계약 및 상해질병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금전의 지불에 한한다)의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당해 일정한 사유 발생 가능성에 기초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규정함.

〈표 18〉 미국과 한국의 보험 정의 비교

구성요소		미국	한국	비교
보험 정의	계약관계	서면계약	약정할 것	미국이 더 구체적임
	리스크전가	확인된 리스크 또는 위험노출(exposure)로 인한 손실(loss)	재산, 생명, 신체의 불확실한 사고	한국은 구체적 사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범위가 제약됨
	약인(consideration)	현금형태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	보험료를 지급	차이 없음
	약인의 영수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인수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며,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한 급부의 어떤 다른 형태를 보상, 방어 또는 제공할 책임이 수반함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미국은 한국의 보험금액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보상, 방어 등으로 구체화
감독 법규		주 보험법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 상법 제638조를 리스크전가의 범위가 재산, 생명, 신체에 국한되지 않도록 미국 NAIC 권고안과 같이 “확인된 리스크 또는 위험노출로부터 생긴 손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취급 보험종목을 허가하면 보험업법상 상품규제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확인된 리스크 또는 위험노출로부터 발생한 손실”이 불확실 또는 우연한 사고로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로 변경이 필요함.

■ 둘째, 미국은 보험상품 규제를 취급하는 보험종목별 및 개인보험의 보험가용성문제 발생 억제에 위한 리스크세분화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보험종목, 판매채널, 요율산출방법, 표준기초서류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은 보험업 영위허가 시 등록한 보험종목에 대해 규제형태(사전인가제, 신고제, 보고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리스크세분화에 대한 규제는 개인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계약자 스스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여 보험회사와 가격협상력이 있는 대규모 계약자(ECPs)에 대해 상품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는 동일한 보험종목일지라도 판매채널별(금융기관대리점, 단종대리점), 유통산출방법별(순보험료법, 현금흐름법),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서류 사용여부, 요율조정횟수별, 사업비부과방식별, 보험기간(일반손보 3년 이상)에 따라 신고제 또는 보고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요인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른 상품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요소임에도 이들 요소를 규제의 단위로 채택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보험상품 규제를 보험업법상 허가종목별 특성에 따라 신고제 또는 보고제, 범위요율제 차등화 등의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⁴⁾

- 또한 현재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pm 25\%$ 조정한도를 두어 범위요율형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종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현재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으로 분산된 보험상품 규제내용을 보험업법으로 상향, 종목별로 재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상품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경우 보험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보험상품 규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규제의 대상과 적용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과 국내의 상품규제 차이점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채택과 재무건전성감독 로드맵과 병행, 검토하여 이들 규제 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야 함.

○ 국내의 경우 OECD 가입 시 추진된 보험가격자유화는 현재의 보험상품 규제체계를 태동시킨 근간이 되었으나 당시와 현재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큰 차이가 있음.

- 20년이 지난 현재는 재무건전성 감독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솔벤시 II를 기초로 한 자기자본규제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의한 부채 공정가치평가제도가 2020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⁷⁵⁾

74)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보험종목단위로만 상품규제를 운영하고 있음(일본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7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7. 3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부록 1〉 FIO의 보험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검토분야	세부이슈	제안내용(recommendation)
재무 건전성 감독	모기지보험회사	연방표준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기준개발
	캡티브	재보험캡티브에 전가하는 것에 대한 표준적이고 투명한 지급능력 감독체제 개발
	RBC 방법론과 적정성 결정	각 주의 기준은 모범기준과 통일표준에 부합해야 함(RBC, ORSA)
	준비금적립	원칙중심적립방식으로 전환
	재보험의 신용담보 제공	전국표준화 노력, 재보험신용제공모델법 및 규제(NAIC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and Regulation)에 부합하도록 재무성과 USTR이 협력
	지배구조	보험회사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원칙을 개발
	그룹감독	각주는 그룹감독기준 개발, 그룹감독대학 신설
	보험계약자보증기금	계약자 보호한도 등에 표준화된 기준 마련
시장 행위 감독 소비자 보호 시장 접근	판매채널허가	등록대리점 및 중개사전국협회개혁법 채택, FIO의 이행점검
	상품인가	모든 주가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에 참여하여 상품인가절차를 개선, 표준화상품개발, 기업정보보험규제 개선
		군인전용 개인용자동차보험 개발
		모든 주가 연금거래적합성모델규제 채택, 시행
	요율규제	각 주는 개인보험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규제형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FIO는 각주의 요율규제 개혁에 공동으로 노력
	리스크 세분화	각 주는 개인보험 가격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준 개발, 보험스 코어사용상품 공급자에 대한 규제감시를 확대함, FIO는 개인정보 활용 관련 연구진행
	비인가 및 재보험개혁법	Dodd-Frank법 이행사항(Surplus Lines 세금회수 단순화) 점검 및 연방개입필요성 검토
	시장행위규제	각 주는 시장행위에 대해 시장규제핸드북에 부합하게 검사와 감시 등의 개혁을 할 필요
	자연거대재해	각주는 자연거대재해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기준의 채택 및 시행

〈부록 2〉 주별 손해보험 요율규제 방법 및 요율규제 수준(2014년 12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주별	보험료 (2013)	보험 밀도	보험종목별 요율규제 방법											요율규제 수준
			주택 종합	개인 자동차	상업 자동차	화재	계열 보험	건강 상해	상업 종합	해상 보험	배상 책임	종합 보험	농장 종합	
알라바마	7,309	3.8	AP	AP	AP	AP	FU	AP	FU	FU	FU	AP	FU	74.1
알래스카	1,733	2.9	FR	FR	FR	FR	FR	AP	UF	UF	AP	AP	FR	52.7
아리조나	8,642	3.1	UF	UF	UF	UF	FU	FU	ECP	ECP	UP	UP	UP	17.4
아칸사스	4,489	3.6	FU	FU	FU	FU	FU	FU	ECP	ECP	AP	AP	FU	36.7
캘리포니아	61,172	2.8	AP	AP	AP	AP	AP	AP	AP	AP	FU	AP	AP	79.4
콜로라도	9,262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FU	FU	37.2
코네티컷	7,698	3.1	AP	AP	AP	FU	FU	AP	FU	FU	FU	AP	FU	69.6
델라웨어	2,139	3.4	FU	FU	FU	FU	FU	FU	ECP	FU	FU	FU	FU	29.8
D.C	1,670	1.5	FU	FU	FU	FU	FU	AP	FU	ECP	AP	AP	FU	39.2
플로리다	41,377	5.2	FU	FU	FU	FU	UF	AP	UF	ECP	AP	FU	FU	36.8
조지아	15,043	3.3	FU	AP	AP	FU	FU	FU	ECP	ECP	ECP	FU	FU	51.8
하와이	2,183	2.9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89.9
아이다호	2,201	3.5	UF	UF	UF	UF	UF	UF	UF	UF	AP	UF	UF	31.1
일리노이	22,221	3.1	UF	UF	UF	UF	UF	UF	UF	UF	UF	FU	UF	19.6
인디애나	9,782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ECP	FU	UF	30.5
아이오와	6,019	3.6	UF	UF	UF	AP	AP	AP	AP	AP	AP	AP	AP	45.1
캔사스	5,988	4.2	FU	FR	FR	FR	FU	FU	ECP	ECP	AP	AP	FU	43.7
컨터키	6,455	3.5	AP	FR	FR	UF	UF	UF	UF	UF	UF	UF	UF	47.8
루지애나	10,401	4.1	FU	AP	AP	FU	FU	FU	ECP	ECP	ECP	FU	FU	48.7
메인	1,969	3.6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1.6
메릴랜드	9,879	2.9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FU	40.7
매사츄세츠	12,631	2.8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FU	FU	35.7
미시건	16,564	3.8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6.0
미네소타	10,238	3.3	FU	FU	FU	FU	FU	AP	FU	FU	AP	FU	FU	41.6
미시시피	4,586	4.4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86.7
미주리	9,843	3.6	UF	UF	UF	UF	UF	UF	UF	UF	FU	FU	UF	21.0
몬테나	2,098	4.8	FU	FU	FU	FU	FU	AP	FU	FU	FU	FU	FU	35.6
네브라스카	4,237	3.9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AP	FU	33.4
네바다	4,051	3.1	AP	AP	AP	AP	AP	AP	ECP	ECP	FU	AP	AP	64.8
뉴햄프셔	2,132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FU	39.5
뉴저지	18,986	3.5	AP	AP	AP	AP	US	AP	UF	UF	AP	AP	UF	70.3
뉴멕시코	2,865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AP	40.2
뉴욕	40,188	3.1	AP	AP	AP	FU	FR	AP	FU	ECP	AP	AP	FU	70.4
노스캐롤라이나	13,231	2.8	FU	AP	AP	FU	FU	AP	FU	FU	AP	FU	FU	69.3
노다코타	2,919	5.2	FU	AP	AP	FU	FU	AP	FU	FU	FU	AP	AP	54.1
오하이오	16,026	2.8	FU	FU	FU	FU	AP	AP	AP	FU	FU	FU	AP	46.8

주별	보험료 (2013)	보험 밀도	보험종목별 요율규제 방법											요율규제 수준
			주택 종합	개인 자동차	상업 자동차	화재	계열 보험	건강 상해	상업 종합	해상 보험	배상 책임	종합 보험	농장 종합	
오클라호마	7,439	4.1	UF	UF	UF	UF	UF	UF	ECP	ECP	UF	AP	UF	18.0
오레건	5,668	2.6	FU	FU	FU	FU	FU	AP	FU	FU	AP	AP	FU	46.7
펜실바니아	21,588	3.3	FR	AP	AP	FR	FR	AP	ECP	ECP	AP	FR	FR	63.7
로드아일랜드	2,025	3.8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FU	38.2
스캐틀라니아	7,593	4.1	FU	FR	FR	FU	FU	AP	ECP	ECP	AP	AP	AP	48.6
스다코타	2,319	5.0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3.5
테네시	9,956	3.5	FU	AP	AP	FU	FU	AP	ECP	ECP	AP	FU	AP	57.0
텍사스	44,533	2.9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2.0
유타	3,648	2.6	UF	UF	UF	UF	UF	UF	UF	UF	FU	UF	UF	22.1
버몬트	1,382	4.7	UF	UF	UF	UF	UF	AP	ECP	ECP	AP	AP	UF	26.0
버지니아	11,682	2.6	AP	FU	FU	FU	FU	FU	ECP	ECP	AP	FU	FU	46.5
워싱턴	11,284	2.8	AP	AP	AP	AP	UF	AP	ECP	ECP	AP	AP	UF	68.7
W버지니아	2,832	3.8	AP	AP	AP	FU	FU	FU	FU	FU	FU	AP	AP	71.4
위스콘신	9,142	3.2	UF	UF	UF	UF	UF	UF	UF	UP	AP	UF	UF	32.5
와이오밍	1,258	2.8	NO	NO	NO	NO	AP	AP	AP	AP	AP	AP	AP	39.9

주: AP: 사전인가, FU: 신고제, UF: 보고제, FR: 범위요율, ECP: 대규모계약, NO: 자율제

자료: 주별 요율규제방법은 III(2015), NAIC(2014c), 건강보험은 <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참조하여 정리.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2006), 「보험심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이기형·이상우(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보험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전망」, 『주간이슈』, 제119호, 보험연구원.

조용운(2010), 「미국 금융감독체제 개편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주간이슈』, 제87호, 보험연구원.

安井敏晃(2010), 法律の適用・解釋における保険概念に役割, 『保険學雜誌』, 第609号.

後藤元(2010), 保険概念における不可欠な條件について, 『保険學雜誌』, 第609号.

Angelo Borselli(2010), “Insurance Rates Regulation in Comparison with Open Competi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Vol. 18, 1.

Baird Webel(2014), “Insurance Regulation: Issues, Background, and Legislation in the 113th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Arcy Stephen(2001), Insurance Price Deregulation: The Illinois Experience, Insurance Rate Regulation Conference Brookings Institution.

Eling Martin et.al.(2009),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 Comparison, Independent Policy Report: The Independent Institute.

EIOPA(2012), EU-U.S. Dialogue Project Technical Committee Reports: Comparing Certain Aspects of the Insurance Supervisory and Regulatory Regim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FIO(2013), How to Modernize and Improve the System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O(2014), 2014 Annual Report on the Insurance Industry.

GAO(2006), Definition of Insurance and Related Information.

Gilbert Ojed et al.(2012), Health Insurance Premium Rate Review Regulation: Case Studies to Inform California, California Program on Access to Care School of Public Health,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rrington(2013), Insurance Rate Regulation in the 20th Century.
- Hunter J. Robert et al.(2013), “What Works : A Review of Auto Insurance Rate Regulation in America and How Best Practices Save Billions of Dollars”,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Regulation Modernization”.
- Insurance Regulatory Law(2011), “A Brief Chronicle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From McCarran-Ferguson to Dodd-Frank(<http://www.insreglaw.com/2011/05/brief-chronicle-of-insurance-regulation.html>)”.
- IIPRC(2014), Annual Report(<http://www.insurancecompact.org/index.htm>).
- Justin L. Brady et.al.(1995),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 Larry J. Bruning(2013), NAIC and Academy Update: Navigating the International and U.S. Regulatory Environment,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 Mckinsey & Company(2009), Improving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 NAIC(2014a), State Insurance Regulation: History, Purpose and structure.
- _____(2014b), 2011/2012 Auto Insurance Database Report.
- _____(2014c), Commercial Lines(EX) Working Group.
- _____(2010), 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Law Guideline 2010.
- _____(2000), Definition of Insurance Working White Paper.
-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Analysi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 Regulatory Laws.
- Regan Lauren et al.(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 Insurance Rate regulation and insured Loss Cost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NAIC.
- Sharon L. Tennyson(2007), “Efficiency Consequences of Rate Regulation in Insurance Markets”, Networks Financial Institute Policy Brief No. 2007-PB-03.
- Stephan P. D’Arcy(2001), Insurance Price Deregulation: The Illinois Experience, The Insurance Rate Regulation Conference Brookings Institution.

Todd Jerry D., Kueber Micheal A., O'Keefe Patrick(2000),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Insurance: Is it Changing?", *CPCU Journal*, Winter 2000.

미국의회도서관(<http://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534/text>)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http://www.insurancecompact.org>)

미국주의회의원전국회의(<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http://www.naic.org/documents/topics_health_insurance_rate_regulation_brief.pdf)